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17
----------	------

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윤재옥 · 이인선 · 정희용
김기웅 · 최수진 · 김소희
이주영 · 김은혜 · 박성민
김상훈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